

비정년계약제교원 인사규정

제 정	2007. 3.
개 정	2007. 9.
개 정	2012. 7.
개 정	2014. 12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비정년트랙계약제 전임교원(이하 “비정년 교원”이라 한다)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비정년교원”이라함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1항의 비정년계약제교원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임면”이라 함은 신규임용, 재임용, 직위해제 및 면직 등을 말한다.

제3조 (자격) 비정년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자격과 경력 등을 갖춘 자로서 연구 실적 또는 산업체 경력 및 교육에 대한 신념과 인격 등을 참작하여 임용한다.

제3조의2 (산업체 경력교수) 본 대학에서 학과의 실용교육과, 산학협력 및 학생 지도(취업지도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등을 담당할 산업체 전문경력인사를 비정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(신설 2007.9.1.)(개정 2014.12.29.)

제4조 (임무) ①비정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.

1. 교육과 산학협력
2. 학생 지도 및 상담
3. 본 대학에서 특별히 부여하는 업무 등

제5조 (임용절차) ①비정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우송학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②비정년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.

③임용시에는 교원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계약임용) 비정년교원은 2년이내의 임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의 계약으로 임용한다.

제7조 (임용계약서)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
1. 비정년교원의 신상명세
2. 근무대학 및 직급, 연봉 등
3. 임용절차 및 임용계약기간
4. 임용계약기간 중의 신분 및 임무
5. 임용계약기간 만료 후의 퇴직
6. 관할 법원

제8조 (직급부여) ①비정년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직급을 부여하여 임명한다.(개정2012.7.22.)

제9조 (보수) ①비정년교원의 연봉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②제1항의 연봉을 정함에 있어 그 종류와 지급액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4. 12. 29.)

③비정년교원에게도 필요에 따라 국내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 (업적평가) ①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는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4. 12. 29.)

②비정년교원의 업적평가에 대한 항목과 기준 등은 부여된 임무 등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면직) ①비정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
1. 사망한 때
2.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
3. 재계약 되지 못하였을 때(개정 2014. 12. 29.)
4. 만 60세가 속하는 학기의 말(개정 2014. 12. 29.)

②비정년교원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.

제12조 (적용) 비정년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본 학원 정관이나 본 대학 관계 규정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